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170호

해고 처분 통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및 처분사유

대상자			(前)소속	직종	처분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일	
박O현	84.01.2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1길 OO, O동 305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보수과	공무직 (국도관리원) 2020. 8. 31.	신규임용일(2020.7.13.)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태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45호)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2.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김정호, ☎051-660-1015, kjh82@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